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주간 입법 동향

Vol. 45 (2022. 1. 17 ~ 1. 21)

DR & AJU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주요 법안 동향

법안 종류	키워드	주요 법안	주요 내용
발의안	기업	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1회, 최대 6년으로 제한. 상근 임원으로 하여금 다른 회사 상근 임직원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함.
	공정거래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범한 자에 대해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국회 계류안	인사/노무 중대재해	③ **건설안전특별법안**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모든 공사 주체들에게 안전 책무를 부여. 이를 소홀히 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건설사업자 등도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여.
공포 법령	공정거래	④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00억원 이상 공사 하도급 입찰결과 공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중소기업 과징금 분할납부 요건 완화.
입법/ 행정예고	IP	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제약사가 약가 인하 등 처분에 반발해 정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을 때 제약사가 처분으로 입은 손실액을 정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1. 발의

*각 법률안 및 검토보고서 확인을 위해서는, 법률안 밑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1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으로 하여금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두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상근 임원의 직무 전념 및 이해상충 금지 의무 확립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또한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반복적인 연임으로 인한 권한의 집중과 금융회사의 공정성 및 독립성 약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상근 임원으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위임조항을 삭제하고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제한 및 총 임기 등을 규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안 제10조제2항). 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D1D1F2I2N4A1R3O2G7A2P7O4Y0V7	아시아경제 22.01.13. 與, "금융지주 회장 연임 1회 제한"…과도한 민간 지배구조 개입 논란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11310092879789	22.01.12. 제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결과
2	 **권은희 (국민의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무자본 인수 ·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개인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무자본 인수 · 합병 불공정거래로 수취한 부당이득 규모는 지난 3년간(2017~2019년) 1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적발된 뒤에도 재범률이 높은 특징이 있는데, 실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자 중 재범자는 전체의 5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 이처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재범률이 높은 이유는 현행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이 있지만 사실상 처벌 수준이 경미하여 형사적인 제재수단으로서 그 실효성이 미흡한 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는 자들에 대한 제재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습으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7조의3 신설). 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2D1U0X8R1Q7Y1Z5U0H9Q3H0Q1U2A5	이데일리 22.01.11. [e법안 프리즘]권은희 "동학개미 울린 `기업사냥꾼` 처벌 강화해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58566632196736&mediaCodeNo=257&OutLnkChk=Y	**22.01.11. 제안**

2. 국회 계류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3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건설안전특별법안	■ 건설공사는 발주 · 설계 · 시공 · 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와 공사 목적물(건축물 · 도로 · 철도 등)이 다양하며, 현장에서 다수의 건설사업자가 동시에 작업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작업하는 건설기계와 건설종사자도 수시로 바뀌는 등 다른 산업과 작업환경에 차이가 있음. 특히,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발주자, 시공자 등 상대적으로 권한이 큰 주체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에도, 실제 사고로 인한 책임은 상대적으로 권한이 작은 하수급 시공자와 건설종사자들이 지는 경향이 있음. 이에, 발주자는 적정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하며 시공자가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건설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며, 사고손실 대가가 예방비용 보다 크다는 인식을 확산하여 안전관리에 우선적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특수성에 맞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건설사고 위험성을 낮추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발주자는 설계 · 시공 · 감리자가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 공사는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이 적정한지 인허가기관의 장 등에게 검토를 받아야 함(안 제8조). 나.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시공자는 해당 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하며, 다수 공종의 건설사업자가 사용하는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하여야 하고, 위험 작업이 현장에서 동시 추진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함(안 제15조).	헤럴드경제 22.01.17. 與,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긴급 당정…“건설안전 특별법 제정 필요”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117000056	**21.06.16. 제안** **21.12.27. 상임위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다.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 안전관리계획서 등에 명기된 안전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는 한편, 시공자가 공사 중지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17조). 라. 건설사업자는 소속 근로자 등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발주자도 보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건설사업자의 사고 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산정하도록 함(안 제31조). 마.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에게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부여하거나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함(안 제34조 및 제35조). 바. 발주 · 설계 · 시공 · 감리자가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9조). 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W1M0Y6K1G5F0J9F0S8H5E9W7F0O9		

3. 공포 법령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일자
4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ㆍ개정 방식을 다양화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제ㆍ개정 시 관련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강화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또한,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외에 중소기업중앙회도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국가 또는 국가 소속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계약의 입찰금액 및 낙찰 결과 등을 입찰 참가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하도급계약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한편, 원사업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회사인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등의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여 분쟁당사자의 비용, 시간 부담 등을 경감하고,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ㆍ개정 방식 다양화(제3조의2) 1) 관련 사업자단체 등이 표준계약서 제ㆍ개정안을 마련하여 하도급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공정위에 심사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공정위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ㆍ개정하려는 경우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청취를 의무화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제ㆍ개정 심사 업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22.01.11. 일부개정** **23.01.12. 시행**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일자
			나.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국가 또는 국가 소속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계약의 입찰금액 및 낙찰 결과를 입찰 참가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함(제3조의5 신설). 다.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하도록 규정함(제12조의3). 라. 원사업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회사인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등의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함(제13조의3 신설). 마.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제도 개선(제16조의2) 1) 목적물의 공급원가 등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해당 비용이 하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하락률이 하도급대금 인하 비율보다 낮은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중소기업중앙회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경우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소법원의 소송중지 제도 등을 도입함(제24조의5, 제24조의8 신설). 사.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함(제24조의9부터 제24조의11까지 신설, 제36조). 아. 과징금 분할납부 관련 규정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제25조의3). 출처: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18757,20220111)		

4. 입법/행정 예고 법령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예고기간
5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개정이유 산정 대상 약제 등 보험약제 협상 제도 확대('20.10.8) 이후 협상과 관련한 불분명한 세부 절차 규정을 정비하고, 약제 제조업자 등에 행정심판·소송 결과에 따라 손실액 환급을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등재 약제의 협상 기간, 절차 정비 및 후속 조치 규정 등 1) 협상 제도 확대('20.10.8) 이후 협상 절차 및 후속 조치 등이 불분명하여 발생하는 제약업계의 혼선을 방지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 2) 기존 협상 이력이 있는 약제의 경우 협상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오리지널 직권 조정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 등을 고려하여 협상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함(최대 60일 → 20일) 3) 협상 결렬 약제의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협상이 최종 결렬된 약제는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함 나. 쟁송 결과에 따른 손실액 환급 제도 도입 1) 약제 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결정 증가에 따라 약제 제조업자 등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방지할 필요 2) 약제 제조업자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상한금액 조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변경 등에 대해 청구한 행정심판의 인용재결 또는 행정심판의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해당 제조업자 등에게 발생한 손실액을 지급하도록 함 출처: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6992?opYn=Y&lsNm=%EA%B5%AD%EB%AF%BC%EA%B1%B4%EA%B0%95%EB%B3%B4%ED%97%98+%EC%9A%94%EC%96%91%EA%B8%89%EC%97%AC%EC%9D%98+%EA%B8%B0%EC%A4%80%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isOgYn=Y&edYdFmt=2022.+1.+18.&stYdFmt=2021.+7.+1.	매일경제 22.01.17. 행정訴 남용에 4천억 재정누수… 복지부, 제약사에 칼 빼들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1/50430/	22.01.17. ~ 22.03.18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기사

[경향신문][사설]중대재해법 D-10, 재계는 반발 접고 준비에 만전 기해야(2022.01.16)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201162044005

주요내용 기업들은 중대재해 범위와 기준이 성긴 데다 책임소재가 모호해 경영하기 힘들어진다며 반발하지만, 중대재해법 시행은 노동자를 희생시켜 최단 시간에 최대 이윤을 내는 시대가 끝났다는 선언이며 변화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도 필요함. 하지만 재계는 중대재해법이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몬다며 시행 전부터 법 개정을 요구해왔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당선되면 시행령을 개정해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음.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신축 공사장 붕괴사고 이후 HDC그룹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진 것은 경영관성을 바꾸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징후적 사건임. 이윤이라는 목적이 사람의 생명보다 먼저인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놔야할 때.

[매일신문][사설]걸면 걸리는 모호한 중대재해법 수정 보완 불가피하다(2022.01.13)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2011317555645247

주요내용 법이 애매한 탓에 재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은 정부 부처에서도 책임자인 장관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바람막이 조직'을 신설하고 있음.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실제 경영자를 대신해 처벌을 받을, 형식상 권한만 가진 '대표'를 선임한다는 말도 나옴. 기업들이 무한책임을 피하려고 '형식상 대표'를 두고, 재해 위험이 낮은 정부 부처까지 수장 보호용 조직을 만들 정도라면 보완이 필요함. 게다가 '형식상 대표'를 둘 수 있는 대기업엔 실효성이 떨어지고, 중소기업엔 '걸면 걸리는 법'이라면 문제가 큼.

[문화일보][사설]李, 중대재해법 “걱정 말라” 호도 말고 폐기 앞장서야(2022.01.13)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11301073111000005

주요내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2일 가진 ‘10대 그룹 CEO 토크쇼’의 시작과 끝이 중대재해법 문제였다는 사실은 상징적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현실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고 했고, 마무리 발언에서도 “후보가 잊지 말고 재고할 길을 열어 달라”고 읍소함. 이 후보는 “입증이 쉽지 않아서 중대재해법의 실제 적용은 거의 쉽지 않을 것”이라는 등 구체적 설명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는 영국의 산재 사망률이 미국보다 높다”고도 덧붙임. 이 후보 말은 법리와 조항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자인의 의미도 있지만, 중대재해법은 여당이 밀어붙인 법안임. 이 후보 발언은 그런 책임을 외면한 것은 물론 법리와 현실의 문제점들을 호도하는 측면이 있음. 이 후보가 진정으로 기업을 생각한다면 ‘선량한 경영자’ 논리로 또 다른 편 가르기를 할 게 아니라 법안 폐기에 앞장서는 게 옳음.

[한국경제][사설]”중대재해법 보완없다” 현장 아우성 귀막은 고용부 장관(2022.01.08)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010738721

주요내용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추가 보완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음. 오히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이뤄진다”고 단속만 강조함. 중소기업의 53.7%는 “시행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고, 중소기업 오너가 CEO를 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만약 형사처벌을 받으면 사실상 폐업 수순으로 내몰린다는 호소가 과장이 아님. 중대재해가 발생한 곳 중 ‘50인 이상’ 사업장만 모두 92곳에 이름. 법 시행으로 중대재해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올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경영자도 수십 명에 달할 전망. 이들이 안전보건의무를 다했는지, 구속 기소될지, 법원 판단은 어떨지 관심 쏟다보면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없을 것. 이런 상황에서 “판례가 쌓이면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란 안 장관의 언급은 무책임하다고 밖에 볼 수 없음.

담당 변호사 및 전문인력

입법전략센터

차동언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0
E : decha@draju.com

이승철
고문

T : 02-3016-8706
E : sclee@draju.com

인사/노무팀, 기업법무그룹

이승택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291
E : stlee@draju.com

공정거래부문

구상모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349
E : smkoo@draju.com

중대재해 자문그룹

김영규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3
E : ykkim@draju.com

IP부문

최종선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288
E : jschoi@draju.com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동훈타워 7,8,10~16층
T. 02-563-2900 E.pr@draju.com W. www.draju.com